

[별표5] 신·구 조문 대비표

<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운영규정>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(안) | 비 고 |
|---|--|--------------|
| <p>제7조 (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및 권한) ④ 연구업단 운영을 위한 안전에 따라 연구단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. <생략></p> | <p>제7조 (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및 권한) ④ <u>연구단</u> 운영을 위한 안전에 따라 연구단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. <현행과 같음></p> | <p>문구 수정</p> |
| <p>제13조(기타) 개연구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체류 (해외여행, 휴가 등)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1.12.1.></p> | <p>제13조(기타) <개정 2021.12.1.> <삭제 2023.2.1.></p> | <p>조 삭제</p> |
| <p>제18조(성과급 지급 기준)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, 교육,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. <생략></p> | <p>제18조(성과급 지급 기준)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① 연도별 <u>사업 종료 전까지</u>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, 교육,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. <개정 2023.2.1.> <현행과 같음></p> | <p>문구 수정</p> |
| <p>제21조(성과급 지급 기준)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신진연구인력의 당해 연도 연구, 교육,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</p> | <p>제21조(성과급 지급 기준)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① 연도별 <u>사업 종료 전까지</u> 신진연구인력의 당해 연도 연구, 교육,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</p> | <p>문구 수정</p> |

| 현행 | 개정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<p>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. <생략></p> | <p>사 실적을 평가한다. <개정 2023.2.1.>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3조 삭제, 제18조 개정, 제21조 개정)</p> | <p>부칙 신설</p> |